

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1995. 4. 29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5. 4. 22
- 다. 회부일자 : 95. 4. 22
- 라. 상정일자 : 95. 4. 28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세무과장 민경철)

가. 제안사유

본조례는 94. 12. 22 지방세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시의 조례개정 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하므로 삭제(안 제4조)
-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(안 제7조, 제29조, 제33조)
- 비과세·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17조)
- 농·수·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함(95 개정 시 누락)(안 제19조)
-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함(안 제2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백창기)

- 조례 제4조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만 따로 정하도록 하고,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며,

- 다음 조례 제7조는 제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잡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조정 하였으며,
- 조례 제17조는 지방세법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따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
- 조례 제19조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인 농·수·축협·임업 협동조합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을 삽입하고 범용어와 일치토록 문항을 조정하였으며,
- 조례 제28조 구관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이 조례 제19조와 중복으로 인하여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
- 조례 제29조제2항의 지방세법 제5장인 동법 제261조부터 제293조의 광범위한 과세면제 및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을 삽입코자 하며
- 조례 제33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감면조항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변경코자 합니다.
- 본 조례의 개정은 94. 12. 2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보완·삭제하고 중복된 조문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리하여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토론요지 : 없음

5. 수정안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

7. 첨부 :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 사본 1부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5-1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4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(세무과)

1. 제안이유

95. 1. 1 개정된 지방세 조례내용 중 94. 12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.

2.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9조의 2 제26조의 2, 제266조제4항, 제292조
- 시행령 제231조
- 시행규칙 제117조

3. 주요골자

- 가.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시의 조례제정 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하므로 삭제(안 제4조)
- 나.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(안 제7조, 제29조, 제33조)
- 다. 비과세·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7조)
- 라. 농·수·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함.(95 개정시 누락)(안 제19조)
- 마.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함.(안 제28조)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제9조 및 제9조의2의”를 제9조의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납기한의 연장”을 “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”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“납부 또는 납입기한”을 “기한”으로 “납기한”을 “기한이 만료되기 전”으로 제2항 중 “납기한”을 “기한”으로 “납기한”을 “기한이 만료된 날”로 “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연장할 수 있다”로 하고 제3항 중 “납기한”을 “기한”으로 “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”를 “연장된 기한내에”로 후단 “납기한”을 “다시”로 하고 제5항 중 “납기한”을 “신고납부기한”으로 “가산금은 그 연장 기간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”를 “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 제목 중 “비과세 및 감면적용자”를 “비과세 적용자”로 하고 “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”을 “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
동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“건축물”을 “부동산”으로 한다.

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-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

제28조를 삭제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법 제5장의”를 “법 제234조의 12의”로 “비과세 또는 감면”을 “비과세”로 한다.

제33조 제목 중 “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”를 “비과세적용자의”로 하고 제1항 중 “법 제5장의 규정에”를 “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”로 “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”를 “비과세 받고자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④(생략)</p> <p>⑤<u>납기한</u>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.</p> <p>제17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(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매,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. 보관, 가공,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</p>	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<u>신고납부기한</u>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17조(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)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19조(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동산 2. 부동산 3. 부동산 4. 부동산 <p>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8조(구관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)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매,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. 보관, 가공,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	<p><삭 제></p>
<p>제29조(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<u>비과세</u> 또는 <u>감면받고자</u>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용도, 기타 <u>비과세</u> 또는 <u>감면대상토지임</u>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,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9조(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법 제234조의 12의 <u>비과세</u> <u>비과세</u></p>
<p>제33조(<u>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</u>)</p> <p>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<u>비과세</u> 또는 <u>감면을 받고자</u>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33조(<u>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</u>)</p> <p>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<u>비과세 받고자</u></p>